

2019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가. 무역의 날 56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접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함
-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무역수지 개선,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
-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
- 무역업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확대·우대함

나.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술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실시
- 특히, 4차 산업·IoT 등 신성장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규제개선 및 무역애로 해소, 우수 한류·생활 소비재 및 디자인·브랜드 제품 수출 등 新수출성장동력 육성에 공로가 있어 정부정책에 호응도가 높은 특수유공자 등 우대·포상 실시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종류	대상
수출의 탑	○ 백만불대 탑(4종) - 1백만불의 탑, 3백만불의 탑 5백만불의 탑, 7백만불의 탑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천만불대 탑(5종) - 1천만불의 탑, 2천만불의 탑 3천만불의 탑, 5천만불의 탑 7천만불의 탑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억불대 탑(32종) - 1~9억불의 탑(매1억불) - 10~90억불의 탑(매10억불) - 100~750억불의 탑(매50억불)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 상	○ 훈·포장 - 산업훈장(5등급) - 산업포장 ○ 표창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무역협회장표창	○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특수유공자 - 소액수출업자 - 신시장개척유공자 -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해외주요바이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 수출물류지원 유공자 · 전자무역유공자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무역구제유공자 -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 · 기술 및 디자인개발유공자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부품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남북경협유공자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수입효율화유공자 · 소비재수출유공자 · FTA유공자 · 신성장산업 유공자 · 일자리창출 유공자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 기관표창 - 최우수 수출지원광역자치단체 - 최우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41종)

-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7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 10억불~90억불, 100억불, 150억불, 200억불, 250억불, 300억불, 350억불, 400억불, 450억불, 500억불, 550억불, 600억불, 650억불, 700억불, 750억불)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년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 브랜드 탑(3개) : 당해년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억불 이상인 업체

나. 정부포상 대상

(1) 포상대상

① 수출업체 종사자

- 대표자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년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 종업원 (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② 특수유공자

- 소액수출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수출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에 기여한 업체 대표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센타별 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다만,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미만의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 신시장개척유공자

- 신규바이어 발굴, 해외전시·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해 처음 시장을 개척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15인 이내)
- 한류 등 문화콘텐츠와 제조·서비스·기술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시장개척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한국상품수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재외동포무역인으로서 **외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0인 이내)

- 해외주요바이어

- 우리나라 물품을 장기간 수입하거나 수입규모(금액, 수량, 품목 등)가 큰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0인 이내)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등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조달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해외바이어로서 수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청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해외주재수출유공자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면서 수출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종사자로서 **외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15인 이내)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는 수출담당 공관직원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자(5인 이내)

- 시험·인증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외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과정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유통물류망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국내무역전시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 국내 무역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인 이내)와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수출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2인 이내)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

- 수출물류지원유공자

- 수출물품의 원활한 수송과 수출물류체계 개선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3인 이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2인 이내)이 추천한 자

- 전자무역유공자

- 무역자동화 및 B2B거래활성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이 추천한 자(각 4인 이내)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전자상거래(온라인, B2C)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통상마찰의 예방 및 완화를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3인 이내)

- 전략물자의 사내 자율준수제도 이행,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으로 국가적 수출통제체제 이행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무역구제유공자

- 국내외에서 덤핑 및 반덤핑 규제,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무역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전문무역상사 등)

- 수출알선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외국기업협회장(2인 이내), 한국무역협회장(5인 이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2인 이내)이 추천한 자

- 거래알선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저가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개발 유공자

- 우수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기술 개발부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디자인개발부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브랜드 개발부문은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각 3인 이내)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무역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별 수출유관단체, 외국환은행 등 수출지원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부품·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품·소재, 기계류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업종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직 또는 국가직(당해지역에 근무하는 자)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단체장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도별 2인 이내, 센터별 1인)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의 개발 및 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남북경협유공자

- 임가공, 개성공단, 광물지원 등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플랜트 수주확대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이 추천한 자(5인 이내)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신기술 제품의 해외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 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유공자(소프트웨어 포함)

-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포함) 등 지식서비스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각 부분별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 SW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3인 이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2인 이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2인 이내)
- 물류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인 이내), 한국선주협회장(2인 이내), 한국통합물류협회장(2인 이내)
-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1인 이내)
- 방송통신·콘텐츠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콘텐츠진흥원장(1인 이내)
- 의료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1인 이내)
- 관광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인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1인 이내)
- 기타 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인 이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3인 이내)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 첫 수출업체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한 중소기업 등 무역수지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5인 이내)

- 대기업 · 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수출촉진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수출기업의 건전한 환위험 관리 문화 정착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원산지제도 운영유공자

- 효율적인 원산지제도 운영으로 공정무역질서 정착 및 국제규범 준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자(2인 이내)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수요 충족 및 산업발전을 꾀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무역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협회장(2인 이내), 해외자원개발협회장(2인 이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1인), 한국석유공사사장(1인), 대한석유협회장(1인), 한국석유화학협회장(1인), 한국무역협회장(1인)이 추천한 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자(5인 이내)

- 수입효율화유공자

- 수출용원자재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수입협회장**이 추천한자 (각 2인 이내)

- 소비재수출유공자

- 농수산물식품, 화장품, 의약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 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대한화장품협회장,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FTA유공자

- FTA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FTA활용확대를 통한 수출증대 및 모범적인 기업문화정착에 기여한 수출업체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각 4인 이내)
- FTA 홍보, 교육 등 FTA 활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기여자 및 FTA 체결·이행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4인 이내)

- 신성장산업 유공자

- 4차산업, IoT, 스마트 공장 등 차세대 혁신성장동력 확산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일자리창출 유공자

- 사람중심 경제의 일환인 좋은 일자리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국민 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 각종 규제개선 및 기업경영 애로해소 등을 통해 원활한 무역증진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한 자(각 2인 이내)

③ 기관표창(대통령기 친수)

-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센터

(2) 정부포상 대상 제외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포상대상자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은 부처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 임원 등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 공개
 -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장회사의 최근 2년내(포상신청일기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를 받은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 다만,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포창추천 가능
-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무역의 날 포상(훈포장, 표창, 수출의 탑)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3) 포상심사

① 수출업체 종사자

○ 대표자

- 수출액,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율, 무역수지개선, 신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수출단가상승률 등을 심사

※ 정부주관 사절단 참여 등 정부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거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종업원

- 소속업체의 평가점수, 근속년수 등을 심사

※ 생산직 근로자, 여성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② 특수 유공자 및 기관표창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특수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대·포상 실시

(4) 기타

- 특수유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협회·단체 등에서 회비납부실적, 기부 금품 등 소속 조직 편의 제공을 추천기준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포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향후 추천 기관에서 제외

4. 수출실적의 산정기간 및 범위

가. 수출실적 산정기간

- 당해년도 : 2018. 7. 1 ~ 2019. 6. 30
- 전 년 도 : 2017. 7. 1 ~ 2018. 6. 30
- 전전년도 : 2016. 7. 1 ~ 2017. 6. 30

나.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의 규정에 의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
- 수출의 탑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 수출은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1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하고, 수탁가공수출은 외화가득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 다만, 유공자포상과 수출의 탑 수여를 위한 금수출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금가공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순외화가득액(=금총수출액-금총수입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되 금 총수입액 중 내수용으로 공급한 금액은 금 총수입액에서 제외

다. 수출실적 확인

-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출입
-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확인 실적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 별지 제4-1호(예)와 같은 서류를 다운받아 제출

분 야	추천기관 및 접수처
○수출지원기관유공자	각 수출지원기관(은행포함)
○부품소재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각 업종별 단체(산업부 등록기관)
○지방수출확대유공자	16개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KOTRA
○남북경협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KOTRA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
(소프트웨어포함)	산업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KOTRA
○무역수지개선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여성무역인력유공자	KOTRA, 한국여성벤처협회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무역협회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KOTRA
○수입효율화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협회
○소비재수출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한국디자인진흥원
○FTA 유공자	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 KOTRA
○신성장산업 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자리창출 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
	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한국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중앙회, 중견
	기업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무역협회(회원지원실)**에 제출

※ 포상관련 문의처(포상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award.kita.net>)

본부(대표전화)	: 1566-5114	서울(포상사무국)	: 02-6000-2331~4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753-7531~3	부산지역본부	: 051-993-3300~1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042-338-1001~4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43-9400~3
강원지역본부	: 033-256-3067~8	인천지역본부	: 032-260-1100~4
전북지역본부	: 063-214-6991~2	충북지역본부	: 043-236-1171~3
경기북부지역본부	: 031-995-6161~2	경남지역본부	: 055-282-4115~6
경기남부지역본부	: 031-259-7850~3	울산지역본부	: 052-287-3060~1
제주지부	: 064-757-2811~2		

마.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p>(1) 포상신청업체</p> <p>- 제출대상</p> <p>① 수출의 탐과 포상 동시 신청 업체</p> <p>② 포상만 신청하는 업체</p> <p>-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업체종사자 포상신청서(A) 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수출실적 등 포상신청서 허위 제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 2. 공적조서 각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제3-1호 서식), 포상신청자 전원 3.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4-1호 서식),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드시 제출 4. 본사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업체에 한함(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minfo.smba.go.kr) 6. 중견기업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해당업체에 한함(중견기업정보마당 : www.hpe.or.kr) 7. 이력서 포상신청자 전원 각 1부(별지 제7호 서식), 사진부착 8. 대표자 이력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사진부착 : 수출의 탐과 포상 동시 신청업체에 한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1부 (미제출시 미가입으로 간주하여 포상대상에서 제외) 10. 무역관련해외사절단참가실적(별지 제9호 서식 :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11. 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자료(별지 제9-1호 서식 : 실적이 있는 대표자의 경우만 해당) 1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p>(2) 수출의 탐만 신청하는업체</p> <p>-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의 탐」 신청서(B) 1부(온라인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2.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4-1호 서식), 실적이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3. 본사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대표자 이력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사진부착
<p>(3) 특수분야유공자</p> <p>-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유공자 포상추천서 1부(추천기관용임 : 별지 제8호 서식) 2. 공적조서 각1부(별지 제3호 서식) 3. 이력서 각1부(별지 제7호 서식), 사진부착 4. 특수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수출업체종사자 추천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1부(사업장별) 7. 중소기업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9.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및 교원에 한함)

◇ 포상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 공적조서, 이력서 각 1부 및 여권사본 등 국적증명사본 1부 첨부

<서식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수출업체종사자 포상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의 탑」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브랜드 탑」 신청서
별지 제3호, 제3-1호 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4호 서식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외국환은행 발급)
별지 제4-1호 서식	로칼 구매확인서에 의한 실적증명서 (KTNET 발급)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중견기업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이력서
별지 제8호 서식	특수유공자 포상추천서
별지 제9호 서식	무역관련 해외사절단 참가실적
별지 제9-1호 서식	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자료
별지 제10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출업체종사자 포상신청서(A)

* 작성대상 : 수출의 탑·개인포상 동시신청 또는 포상만 신청하는 경우

① 신 청 업 체	법인번호		업체명	(한글)	대표자	(한글)
	무역업고유번호			(한자)		(한자)
주 소(공장, 사무소 등 전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공장, 사무소 등 전사업장)			
1)(본사)			→			
2)(공장)			→			
3)			→			
4)			→			
5)			→			
업체구분 (해당란에 O표)		* 업체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본사지방소재(), * 상장여부 : KOSPI(), KOSDAQ() * 업종구분 : 제조업(세부 제조품목 기재), 서비스업(세부업종 기재요망), 농림수산업(세부업종 기재요망) * 특이사항(중복기능) : 소비재(),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국 다변화(), 무역일자리 창출(고용증가 근로자 수 기재요망) - 고용증가 근로자 수 : 2018년 12월말 근로자수 - 2017년 12월말 근로자수, 단 근로자는 고용 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포상신청		수출의 탑 (), 개인포상 ()				
신청탑종류		()탑 * 예) (100만불)탑				
담당자성명 :		TEL:		HP:		e-mail :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TEL:
② 수 출 실 적	구 분	전전년도(a) 2016.07.01~ 2017.06.30	전년도(b) 2017.07.01~ 2018.06.30	당해년도(c) 2018.07.01~ 2019.06.30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	당해년도 주종 수출품목(금액순)
	직수출(A)	천불	천불	천불	%	1)HS: 품명: 2)HS: 품명:
	로컬등기타수출(B)	천불	천불	천불	%	
합계(A+B)	천불	천불	천불 ^{1*}	%		
③수입실적				천불 ^{2*}	*HS는 10단위기준	
④무역수지(당해년도)		금액		천불, 외화가득율(1 [*] -2 [*] / 1 [*]) :		%
⑤ 시장 개 척 (당 해 년 도)	5대 시장	천불, 수출비중 :		%		※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기타시장	천불, 수출비중 :		%		※ 상기 5대 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
⑥ 기 술 개 발	신기술개발	품목명 :			인정기관	
	정부기술개발참여	사업명 :			시행기관	
	수입대체상품생산	품목수 :			품 목 명	
	자기상표제품수출	상표수 :		품목수 :		상 표 명
⑦ 유 공 자						
추천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現 재직회사)		과거포상기록
대표자				년	월	소속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
종업원(사무직)				년	월	
종업원(생산직)				년	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24호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2019. . . 회사명 대표자 (인) </div>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의 탑」 신청서(B)

* 작성대상 : 수출의 탑만 신청하는 경우

① 신 청 업 체	법인번호		업체명	(한글)	대표자	(한글)
	무역업고유번호			(한자)		(한자)
	주소	본사 : 공장 :				
	신청탑종류	()탑 * 예) (100만불)탑				
	업체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좌측 해당 란에 ○표 요망				
	특이사항 (중복가능)	소비재(),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국 다변화(), 무역일자리 창출(고용증가 근로자 수 기재요망) - 고용증가 근로자 수 : 2018년 12월말 근로자수 - 2017년 12월말 근로자수, 단 근로자는 고용 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담당자	성명 : TEL : 핸드폰 : e-mail :				
주거래은행 :		은행	지점	담당자 :		전화 :
산재보험관리번호 :						
② 수 출 실 적	구 분	전전년도(a) 2016.07.01~ 2017.06.30	전년도(b) 2017.07.01~ 2018.06.30	당해연도(c) 2018.07.01~ 2019.06.30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	주요 수출품목 (금액순)
	직수출(A)	천불	천불	천불	%	1)HS: 품명: 2)HS: 품명: ※ HS는 10단위기준
	로컬등기타수출(B)	천불	천불	천불	%	
	합계(A+B)	천불	천불	천불	%	
③수입실적		천불	천불	천불		
④공적요지(500자 이상) * 필요시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						
<p>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24호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 . . .</p> <p style="text-align: center;">회사명 대표자 (인)</p> <p>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p>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기재요령

1. ①항의 업체구분란과 포상신청란은 해당란에 ○ 표시
※ 업체구분란에서 **서비스업**은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직접 수출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2. ①항의 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란은 해당업체 전 사업장의 주소 및 전산등록번호를 주사업장순으로 전부 기재할 것
(예) 2012-0000000 총 11자리숫자로 표시(자세한 것은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필히 첨부
3. ②항의 “직수출”은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무역협회의 전산자료 실적, “로칼 등 기타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다만,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한 경우 무역협회에서 발급)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발행한 ‘로칼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증명서(별지 제4-1호)’ 수출실적 합계액을 기재 (“로칼 등 기타수출” 중에서 ‘중계무역, 위탁·수탁가공수출’ 실적은 가득액만 기재)
※ 직수출 실적확인 :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및 국내 각 지부에서 확인서 발급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도 직접 발급 가능
※ **신장률은 전년도의 전전년 대비 수출신장률과 당해년도의 전년대비 신장률의 산술 평균값을 기재할 것**
4. ③항은 무역협회의 전산자료 실적을 기준으로 함
5. ⑥항의 “신기술개발”은 NET, NEP 마크획득, 장영실상 수상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신기술 개발로 인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증빙서 첨부(최근 3개년 실적에 한함)
“수입대체품생산”은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에 당해품목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해당단체(조합, 협회등)의 증빙서 첨부(최근 3개년 실적에 한함)
“자기상표제품수출”은 특허청의 상표등록증과 수출계약서(수출신고신필증)사본 1부
6. ⑦항의 과거포상기록은 **훈장, 포장, 대표(대통령포창), 국표(국무총리포창), 장관포창, 기타 차관급/청장/광역 지자체장 이상의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조 서

※ 빗금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한글)	(한자)	
(2)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년	월	일
(4)국 적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소속사업장 산재보험관리번호
(9)직 위	(10)등 급(직급·계급)	(11)동종업계 총 수공기간	(12)현 소속업체 근무기간
		년 월	년 월
(13)공적요지(50자 이상 ~ 100자 이내)			
* (31)공적사항을 요약			
(14)추천훈격		(15)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9. . .			
추 천 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20)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21)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22)제재사유	
주요경력(민간 및 군사 학력과 경력)			
(23)년 월 일	(24) 이 력	(25)년 월 일	(26)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7)년 월 일	(28)내 용	(29)년 월 일	(30)내 용
(31) 공 적 사 항			
* A4 4장이상 5장 이내로 작성			
(이하 백지사용)			

※ 기재요령(수출의 탐만 신청하는 업체는 작성할 필요 없음)

* **외국인의 경우** 국문공적조서와 함께 **영문공적조서**를 반드시 제출

(13) **공적요지**는 (31)공적사항의 요약으로 반드시 50자 이상~100자 이내로 작성

(23)~(26)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이상 기재하며, **경력**은 최초입사(개인의 쏘경력 중)년월을 포함하여 주요경력 기재

(27)~(30) **과거포상기록**은 총리이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정부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31) **공적사항**에는 다음 항목을 순서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 A4용지 4매 이상-5매 이내)

가. 대표자 ①회사설립년도 ②자본금 ③종업원수 ④해외지사 ⑤매출액 ⑥복지시설을 항목별로 작성
 ⑦최근 3년간 연도별 수출실적, 당해연도 지역별·품목별 수출실적을 상세히 기록
 ⑧기술개발,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을 위한 노력 등을 기재

나. 종업원 ①근무년수, 해외근무경력, 회사 내에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를 위한 기여도
 ②사의 표창수상 사실 등 개인공적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증빙자료 첨부(평가요소)

(별지 제3-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

공 적 사 항

(1)수공기간(근무기간)	【작성지침】 ※ 수공기간을 고려하여 수행한 업무를 시간순으로 열거형식으로 작성
가. 나. }	
(2)국가발전 기여도	【작성지침】 ※ 생산 제품, 기술 등을 고려하여 2~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대표자 : 기업 전체업무의 성과를 대상으로 작성 - 근로자(근로자/생산직) : 기업 성과에 대한 기여를 내용으로 작성
가. 나. }	
(3)국민생활 향상도	【작성지침】 ※ 노사관계, 인재육성, 생산제품이 국민생활 향상(편리제공,수입품대체등)에 미친 영향 - 대표자 : 기업 전체업무의 성과를 대상으로 작성 - 근로자(근로자/생산직) : 기업 성과에 대한 기여를 내용으로 작성
가. 나. }	
(4)창조적 기여도	【작성지침】 ※ 무역진흥과 별도로 정부 정책에 동참(에너지절약,동반성장,상생협력등)한 내용 위주로 작성
가. 나. }	
(5)무역진흥 기여도	【작성지침】 ※ 업태별(부품산업, 에너지산업 등)로 작성(특수유공은 분야별 공적을 고려하여 작성) - 수출증대 노력에 따른 무역진흥에 대한 기여 내용
가. 나. }	
(6)사회공헌 및 기타 기여도	【작성지침】 ※ 사회공헌 내용 및 기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
가. 나. }	

※ 기재요령 : 글자크기 아래한글 10포인트로 작성. 항목별로 최소 200자 이상이어야 하며 공적사항 전체 내용은 최소 2,000자 이상(A4용지 4-5페이지)이어야 함.

(별지 제4-1호 서식)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① 업 체 명					② 법인등기번호	
					③ 무역업고유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용 도	무역의날 포상신청
⑤ 수 출 실 적	구 분	전전년도(A) 2016.7.1~2017.6.30	전년도(B) 2017.7.1~2018.6.30	당해년도(C) 2018.7.1~2019.6.30	최근 3년간 평균 신장율	
	Local L/C 수출				%	
	구 매 확 인 서				(전년도의 전전년 대비 신장율과 당해 년도의 전년대비 신장율의 산술평균값)	
	합 계					
<p>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24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19. . .</p> <p style="margin-left: 100px;">발급기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인)</p> <p style="margin-left: 100px;">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p>						

※ 별지 제4-1호 서식은 로컬 수출실적에 한해 별지 제4호 서식을 갈음함

※ 상위 기재된 양식은 KNET 온라인 수출실적 증명서에 대한 샘플이며, 포상 또는 수출의 탑 신청 기업은 KNET의 간접수출실적증명서서비스 홈페이지(<http://ulocal.utradehub.or.kr>)에 접속,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온라인 신청, 발급 제출)

중 소 기 업 확 인 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용도			
<p>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p> <p>2019년. . .</p> <p>중소벤처기업부장관</p>			

※ 단, 종업원 수와 자본금은 2019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 발급 문의처 : 중견기업연합회 ☎ 02-3275-2226

(별지 제8호 서식)

특수유공자 포상추천서

추천 기관	기관명						
	담당자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Mail :					
연번	추천부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과거포상기록 (증빙서사본첨부)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1							
2							
3							
4							
5							
6							
7							
8							
9							
10							
<p>첨부서류 1. 공적조서 각1부(별지 제3호 서식) 2. 이력서 각1부(별지 제6호 서식), 사진부착 3. 특수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업체종사자 추천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1부(사업장별) 6. 중소기업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8.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및 교원만 해당)</p>							
<p>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24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 . . .</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자 인</p>							
<h3 style="margin: 0;">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h3>							

무역관련 해외사절단 참가실적

1. 사절단 개요

○ 사절단 명칭 :

○ 사절단 단장

- 소속 :

- 직위 :

- 성명 :

○ 파견시기 :

※ 적용기간 : 2018. 7. 1 ~ 2019. 6. 30

○ 파견지역 :

2. 참석자

○ 회사명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자료

① 업 체 명			② 법인등기번호	
			③ 무역업고유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기업유형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⑥ 일자리 수	2017년 12월말	명	⑦ 고용증가율 * 산식 : (2018년 12월말 근로자수 - 2017년 12월말 근로자수) / 2017년 12월말 근로자수 * 100	%
	2018년 12월말	명	⑧ 정규직비율 (2018년 12월말 기준)	%
첨부서류 : 고용보험가입 고지서 (2017년 12월말, 2018년 12월말)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9. . .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별지 제9-1호 서식은 유공자 포상 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대표자에 대한 평가 우대를 위한 증빙자료에 해당함
-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기준시점 2017년 12월말 대비 2018년 12월말)이 5% 이상인 기업(증가한 일자리 수가 5명 이상인 중기업, 3명 이상인 소기업의 경우 동일 적용) 대표자에 대해 평가 시 가점 제공
-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 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 ○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